

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5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9. 6. 10.
발 의 자 : 김명연의원 외 6인

□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안산시의원 겸직 및 변동 시 신고하도록 하며,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.
-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.
- 나. 안산시의원의 겸직사항을 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또한 겸직변동 시에도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다.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해당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(안 제11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

○ 지방자치법 제35조

○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

○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○ 관련 공문

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“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조 중 “제33조”를 “제35조”로 한다.

제5조(겸직신고)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영리행위의 제한) 의원은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서식)

안산시의회의원 겸직(변경) 신고서

(제5조 관련)

소속정당				선거구분	지역구	
성명	한글			비례대표		
	한자			생년월일		
겸직내용	기관 단체명					
	직위			재직기간		
	보수	(택일) 연 월 원 월 원 원			전화번호	
	주소					

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안산시 의회의원 (인)

안산시의회 의장 귀하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안산시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겸직신고)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자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영리행위의 제한) 의원은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제5조 ~ 제8조(생략)</u> 제9조(겸직금지)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.	<u>제7조 ~ 제10조(현행 제5조~제8조와 같음)</u> 제11조(겸직금지)----- 제35조가 ----- -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제10조 ~ 제14조 (생략)</u>	<u>제12조 ~ 제16조 (현행 제10조~ 제14조와 같음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<신 설></u>	<u>부칙</u>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<별지 서식></u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4">안산시의회의원 겸직(변경) 신고서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소속정당</th> <th>선 거 구 분</th> <th>지역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성명</td> <td>한 글</td> <td></td> <td>비례대표</td> </tr> <tr> <td>한 자</td> <td></td> <td>생년월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겸 직 내 용</td> <td>기 관 단체명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직 위</td> <td></td> <td>재직기간</td> </tr> <tr> <td>보 수</td> <td>(백일)연 원 월 원</td> <td>전화번호</td> </tr> <tr> <td>주 소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안산시 의회의원 (인) 안산시의회 의장 귀하</p>	안산시의회의원 겸직(변경) 신고서				소속정당		선 거 구 분	지역구	성명	한 글		비례대표	한 자		생년월일	겸 직 내 용	기 관 단체명			직 위		재직기간	보 수	(백일)연 원 월 원	전화번호	주 소		
안산시의회의원 겸직(변경) 신고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속정당		선 거 구 분	지역구																										
성명	한 글		비례대표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한 자		생년월일																										
겸 직 내 용	기 관 단체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직 위		재직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보 수	(백일)연 원 월 원	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